

SK케미칼

임직원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기준



임직원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

회사의 윤리규범실천지침 제2조 4항 <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금지>에 의거하여, SK케미칼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,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.

상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✓ 공직자를 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의 업무 목적 지출은 전결권자의 승인을 거쳐 집행할 수 있습니다.
- ✓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및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초과와 식사 및 선물, 10만원 초과와 경조사비(축의금/조의금 5만원, 화환포함시 10만원)는 부정청탁금지법(김영란법)에 의거해 금지됩니다.
- ✓ 접대는 식사, 술자리, 골프,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사교적 모임을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하며,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.
- ✓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알리거나 부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.
- ✓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가피한 접대를 받은 경우, 혹은 해당 정황을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